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06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이정헌・박홍배・이기헌

박민규 • 이훈기 • 김 현

황정아 · 민형배 · 허성무

한민수 · 최민희 · 김영환

이병진 • 정진욱 • 서영교

임미애 • 박희승 • 이워택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품목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방법·절차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정보제공 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② (생 략)	및 보안)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		
	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u>야 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제3항</u>	<u>⑤</u> 제4항		
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			
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	<u></u>		
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u>제3항</u> 에 따른 전	<u>제3항에 따른 사전</u>		
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	협의의 방법·절차 및 제4항		
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